

## “하이퍼링크는 BT 특허 아니다”...미 법원

하이퍼링크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받으려는 브리티시 텔레콤의 시도가 실효를 거두기 힘들 전망이다.

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예비 청문회에서 연방판사는 “브리티시 텔레콤의 하이퍼링크 특허권을 인정하기 힘들 것 같다”고 판결했다고 와이어드가 보도했다.

브리티시 텔레콤은 미국 웹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모든 하이퍼링크는 자사가 지난 1976년 특허권을 획득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리티시 텔레콤은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콜린 맥마혼 미 연방판사는 “브리티시 텔레콤이 지난 1970년대에 획득한 특허는 벌써 시대에 뒤진 기술”이라고 말했다. 브리티시 텔레콤은 이번 소송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을 앞두고 양측 변호인들은 차트와 전자 프리젠테이션을 동원하는 등 자신들의 주장을 쉽게 설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와이어드는 전했다.

배심원들이 기술 언어를 이해하기 힘들 것을 우려한 맥마혼 판사가 양측에 쉽게 설명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이퍼링크는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브리티시 텔레콤 측은 지난 2000년 중반 자신들의 히든 페이지(Hidden Page) 특허가 현재의 하이퍼텍스트 링크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브리티시 텔레콤은 자신들이 보유한 1만5천개의 국제 특허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히든 페이지는 영국 우체국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 개발된 프레스텔 기술의 한 부분이다.

브리티시 텔레콤은 지난 1976년 미국에서 특허를 청구, 지난 1989년 특허권을 획득한 바 있다.

브리티시 텔레콤의 히든 페이지 특허는 현재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기한이 만료됐다.

한편 브리티시 텔레콤은 지난 2000년 6월 아메리카 온라인, 프로디지 등 미국내 17개 ISP 들에게 하이퍼링크 라이선스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자신들이 접촉한 모든 회사들이 라이선스료 지불을 거부하자, 브리티시 텔레콤 측은 직접 법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 MPG분쟁 “2라운드” 돌입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m커머스를 위한 전자지불 서비스 준비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그 근간이 되는 모바일 페이먼트 게이트웨이(MPG) 시스템을 둘러싼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특허분쟁이 제2라운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자지불 솔루션 벤처기업 페이뱅크(대표 장중혁)와 대형 이동통신사 SK텔레콤(대표 표문수)간 무선결제 시스템 및 서비스를 둘러싼 특허권 논란, 일명 “MPG 특허분쟁”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페이뱅크 특허에 대한 의의제기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MPG 특허분쟁은 지난해 3월 SK텔레콤이 국내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무선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자, 이

미 “무선단말기를 이용한 전자거래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거래 방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뱅크가 특허침해를 제기하면서 촉발된 것.

이후 다음달인 4월 양사간 협상을 위한 실무진이 구성되면서 분쟁은 조정되는 듯 했으나 SK텔레콤이 돌연 협상을 결렬하고, 이어 알려지지 않은 제 3자가 특허청에페이뱅크 특허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됐다.

이에 대해 페이뱅크 장증혁 사장은 “그동안 특허청의 판정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며 “이제 특허청으로부터 우리의 특허가 정당하다는 판정까지 받은 이상 더 이상 특허권 행사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장 사장은 “금명간 SK텔레콤에 경고장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SK측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면 우리도 협상에 임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강력한 법적 대응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페이뱅크는 특히 이번에 이의제기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명실상부 자사가 무선결제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특허권자임을 대외적으로 입증하게 됐다고 판단, 추진중인 무선 전자거래 지불 허브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현재 KT·LG텔레콤 등 통신사들과 공동 사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통신사들에게 실시권을 주고 라이선스비를 받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이의제기 기각 과정에서 페이뱅크의 특허권 범위가 현재 상용화된 무선티케팅 서비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 앞으로 디비뱅크 등이 선점한 관련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카페라떼 상표 독점 못해”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는 13일 매일유업이 “‘카페라떼’ ‘CaffeLatte’라는 상표를 사용한 커피 또는 커피 음료를 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한국네슬레와 한국코카콜라보틀링 등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매일유업이 97년 4월부터 판매한 ‘카페라떼’ 등이 여러차례히트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소비자에게 상당히 알려진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커피숍 등에서 98년부터 ‘카페라떼’를 커피 음료의 한 종류로 판매하는 등 보통명칭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식별력이 없다”고 밝혔다. 97년부터 지난 2000년말까지 775억원 가량의 ‘카페라떼’ 제품을 판매한 매일유업은 다른 회사들이 이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경쟁 행위라며 지난해 가처분신청을 냈다.

출처 매일경제

## “카스 맥주, 카스맥주 유사상표 아니 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카스 맥주를 제조하는 OB맥주사가 유사상품을 판매해 손해를 끼쳤다고 금호맥주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의 ‘CASS’ 상표와 피고측 ‘Cap’s’ 상표는의관과 칭호, 관념이 모두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카스 용기가 나오기 전부터 유사

한 형태의 맥주들이 생산,수입돼 왔으므로 카스 용기의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현저한 상품표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OB맥주는 캡스 맥주가 자사의 카스 맥주와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일으키고 부정경쟁행위방지법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출처 매일경제

대했다.

하지만 이 대학은 여전히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1백50만달러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허관리를 전담하는 위스콘신 졸업생연구재단(WARF)과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연구를 지원해온 파트너 기업 제론간의 특허분쟁이 돌출됐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경제

## **미국 대학 특허사업전략 ‘비극’**

미국의 대학들이 재정을 늘리기 위해 잇따라 도입했던 “특허사업화 전략”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각 대학은 자체 연구소가 개발한 신물질 등을 특허출원, 기업에 라이선스를 주고 팔았으나 이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품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기술매니저협회(AUTM)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미국 대학들의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7천 6백12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이중 3천건 이상은 기업들에 라이선스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연구의 기업체 후원은 전체 연구비중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막중하다. 하지만 폐단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또 다양한 특허권들이 연구성과를 골고루 배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허권을 둘러싼 법정다툼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위대한 과학적 발견과 그것의 상업화는 다른 문제인 것이다.

지난 98년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은 자체 연구소가 인간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분리하는데 성공했을 때 즉시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으로 기

## **법원, 도메인 선점 잇따라 제동**

유명상표나 기업의 도메인을 선점해 이익을 챙기려는 사례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www.interpark.com)는 이모씨가 쇼핑몰 도메인으로 이용하던 “www.interpark.co.kr”을 오랜 법정싸움 끝에 최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1998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interpark.co.kr이란 도메인을 등록한 뒤 2000년 3월부터 8월까지 인터파크와 유사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적지않은 잡음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는 그해 10월 서울지법에 “도메인이름등록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말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전자양판점 하이마트(www.himart.co.kr)도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사쇼핑몰 도메인으로 쓰이던 “www.himart.com” 도메인을 확보했다.

또 미국의 유명인터넷업체인 아마존과 알타비스타도 도메인을 도용한 amazon.co.kr과 altavista.co.kr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말소판결을 받았다.

출처 한국경제

## 포털, 저작권 분쟁 휩싸인다

대형 포털들이 저작권 분쟁에 줄줄이 휘말리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 만화 서비스와 관련해 게임업체로부터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으며 프리챌도 마이홈피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한 업체로부터 받았다. 드림위즈와 천리안도 조만간 홈페이지 제작 방법과 관련해 특허 침해분쟁에 휩싸일 전망이다.

온라인 만화 X2Comix를 서비스하고 있는 GV(대표 윤기수)는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을 상대로 온라인 만화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다음이 GV가 독점하고 있는 학산문화사의 인터넷 만화 콘텐츠 사용권을 아무런 권한 없이 침해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현재 만화 콘텐츠 제공 계약자인 D3C NET이 GV에 인터넷 만화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커뮤니티 포털 프리챌(대표 전제완 · www.freechal.com)도 지난 14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싸이월드로부터 프리챌의 마이홈피 서비스가 싸이월드 서비스를 표절했다는 내용의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

이와 함께 드림위즈(대표 이찬진 · www.dreamwiz.com)와 천리안(대표 박운서 · www.chollian.net)은 특허권 분쟁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홈페이지 제작방법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하이홈(대표 최재학 · www.hihome.com)은 이들 포털을 포함해 8개 업체를 상대로 이번주 중 특허 침해 내용증명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홈 측은 이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에디터

서비스가 하이홈의 특허 취득에 따라 상당부분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처 내외경제

## “아파트 이름” 분쟁

아파트 브랜드 “현대”의 무단 사용 여부를 놓고 브랜드 소유권자인 옛 현대그룹 5개 계열사와 공사 시행업체인 대상이 법정에서 맞붙게 됐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건설중인 “대상타운 현대아파트”의 명칭과 관련, 브랜드 소유권자인 현대산업개발 등 5개사는 공사 시행업체인 대상과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1238명의 분양자들을 상대로 “아파트의 외벽 · 출입구 · 입간판 등에 “현대” 또는 “現代”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서비스표를 무단 사용한 만큼 각 회사에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현대산업개발 등은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대상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냈다가 취하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대상측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시공업자인 고려산업개발에 연대보증을 선 현대산업개발이 미지급금을 대신 이행하라”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사건의 발단은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공사와 관련, 최초 시공업자였던 고려산업개발이 공사가 완료될 무렵 부도로 쓰러지면서부터. 도급계약 당시 “현대”의 서비스표권자인 현대산업개발은 고려산업개발 공사에 연대보증을 썼고, 고려산업개발의 부도로 시행업자인 대상이 직접 마무리공사를 맡아 하면서 “현대” 브랜드를 계속 사용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이 브랜드 소유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사용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적재산권 권리보호가 미미한 상황에서 국내 아파트 유명 브랜드인 “현대”가 무단 사용됐다”면서 “임의로 사용한 업체측에 당연히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상측 관계자는 “원시공자인 고려산업개발측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연대보증을 썼다”면서 “이는 “현대” 브랜드 사용을 승인한 행위이므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 특허 “파장”

한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취득한 특허가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서비스 제공 및 솔루션 판매 업체인 하이홈이 최근 자사기술에 대한 특허취득을 계기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등에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이홈은 드림위즈 등 8개 업체에 다음달초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이들 업체를 고소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하이홈의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관련업계는 하이홈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하이홈의 이번 특허 취득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드림위즈 관계자는 “하이홈의 특허 기술과 서비스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다른 업체들의 온라인 서비스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이홈이 법적인 대응을한다면 우리도 특

허 무효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맞섰다.

현재 드림위즈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들이 자사 회원들에게 온라인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홈페이지 제작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나모 인터랙티브도 오프라인을 통한 패키지 판매에서 벗어나 온라인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시점이어서 하이홈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모의 ‘액티브 스퀘어’는 나모의 웹에디터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용 솔루션으로 드림위즈, 채널아이, 하나넷 등 포털사이트들에 공급돼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모 관계자는 “액티브 스퀘어의 시장이 포털 업체보다는 일반기업의 그룹웨어나인트라넷 분야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하이홈의 특허 취득과 관련이 크지 않다”며 “어쨌든 온라인 에디팅 기술이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하이홈측은 “특허를 출원한 시점은 인터넷 전용선이 보급되지 않아대부분 모뎀을 사용하던 지난 99년으로 우리 기술은 획기적이고 독창적이었다”며 특허 취득 부적절성 주장을 일축하며 자사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하이홈은 특허 취득을 무기로 다른 업체들이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쳐나갈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의 대응 및 이에 따른 결과가 주목된다.

출처 연합뉴스

### 권법, “한국-유럽-일본 등서 CDMA 특허 분쟁 승리”

퀄컴이 한국을 비롯 유럽, 일본 등에서 진행된 CDMA 특허 분쟁에서 승리했다고 ZD넷이 보도했다.

3년여에 걸친 이번 특허 분쟁을 제기한 것은 지멘스, 모토롤라 등.

이들은 퀄컴이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CDMA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멘스와 모토롤라는 자신들이 이 지역에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CDMA 라이선스를 넘길 것을 주장해 왔다.

ZD넷에 따르면 유럽 특허사무국은 CDMA 휴대폰 신호를 통제하는 장비에 대한 퀄컴의 특허권을 인정했다.

이 분쟁은 지난 98년부터 시작됐다. 퀄컴 측은 또 한국에서도 전파를 형성해 휴대폰 통화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장비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도 다른 신호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휴대폰 안테나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DMA 특허 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퀄컴은 세계 최대 휴대폰 사용 지역 중 하나인 아시아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ZD넷은 전했다. 퀄컴은 수익의 대부분을 휴대폰 제조업체와 휴대전화 사업자들의 라이선스 비용을 통해 올리고 있다.

CDMA는 퀄컴이 개발한 기술로 세계 휴대폰 시장의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출처 inews24

운영하는 이모씨가 “이동갈비”라는 이름으로 출원한 서비스표 등록을 안 해준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출원거절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동”은 갈비요리로 유명한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만큼 상품의 생산지만을 표기한 상표나 서비스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6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 소갈비요리 체인점 등을 열기 위해 “이동갈비”라는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널리 알려진 명칭을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출처 한국경제

## e베이, 상표권 침해로 비드베이에 소송

온라인 경매 사이트 e베이가 자사의 상호 도용을 이유로 비드베이(BidBay.com)에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e베이는 비드베이라는 상호와 무지개 빛 로고가 자사의 것과 유사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비드베이는 옥션다이너닷컴(uctionDiner.com)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 최근 비드베이로 이름을 바꿨다.

비드베이 담당 변호사인 배리 사바햇(Barry Sabahat) “베이라는 이름과 무지개빛 형상을 e 베이만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 “동갈비” 명칭 독점사용 불가.. 대법원,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음식점을

e베이 측의 소송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e베이가 측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e베이는 일전에도 브릭베이(Brickbay.com)라는 업체에 상표권 도용을 이유로 소송을 걸어 결국 브릭링크(Bricklink.com)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할 정도로 자사의 상표권 보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출처 inews24

중재신청을 냈고 WIPO는 우리나라 장문철 교수를 중재 패널로 위촉한 바 있다.

장 교수는 이 심사에서 “프랑스 국영TV의 ‘france2’에 대한 상표권 주장은 해당 상표가 프랑스와 유럽에만 등록되어 있을 뿐 대한민국에서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김씨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하여금 혼란을 일으켜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인하려 했다는 국영TV측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판결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프랑스 국영TV와 도메인 소송, 국내 이 승 소

프랑스 국영방송사의 도메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프랑스 지방법원으로부터 도메인 이전명령 판결을 받았던 국내인이 최근 세계 지적재산권 중재기구(WIPO)를 통한 도메인 분쟁조정 과정에서 역전으로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메인 분쟁은 작년 4월 프랑스 국영TV가 김씨의 등록 소유로 되어있는 “france2.com” 도메인이 “자사의 ‘france2.fr’ 도메인과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했고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재해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김씨를 상대로 프랑스 낭트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으로 도메인 이전명령과 함께 20만 프랑(한화 3400만원)의 배상금 지급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프랑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france2.com” 도메인은 국가 이름에 단지 숫자를 결합한 보통명사로서 상표 등록의 대상이 아니라며 곧바로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이전금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10월경 프랑스 국영TV측은 WIPO의 도메인분쟁 조정위원회에

## 인터넷상의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비준

인터넷에서의 음악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 조약이 비준됨에 따라 온라인 상의 문화·예술에 대한 또 하나의 보호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AP통신이 보도했다. 국제연합(UN) 산하 국제 지적재산권 기구(WIPO)는 “음악가와 프로듀서들의 권리를 온라인 상에서 보호하는 이번 협정을 온두라스가 받아들임으로써 조약발효 정족수인 30개국을 채우게 됐다”며 “규정에 따라 정식발효는 3개월 뒤인 5월 20일부터 이뤄진다”고 밝혔다. “WIPO 음반 및 공연 협정”(WPPT)이라 불리는 이번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지난 6년간 160개 UN 소속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돼온 WIPO의 인터넷 저작권 보호운동이 또 한번 결실을 맺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WIPO의 카말 이드리스 사무총장은 “이번 조약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자와 창작활동에 더욱 포괄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세계 음반업계를 대표하는 국제 음반산업

연맹(IFPI)의 제이 버먼 회장도 “조약이 발효되면 음반업계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세계적 차원의 저작권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 지적재산권 연합(IIPA)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음반 및 음악관련 회사들이 무단복제로 입은 피해액은 2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다음달에는 온라인 상에서의 문학 및 미술작품 저작권 보호 국제조약인 “WIPO 저작권 협정”(WCT)가 정식발효에 들어간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분량은 1억1,700만곡.

이번 기준을 적용할 경우 1년에 200만달러를 로열티로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는 고정 비용으로 하지 말고 매출비율에 따라 적용하자는 웹캐스팅업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번 결정의 파문이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서울경제

## 인터넷방송 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지불해야

미국 인터넷방송국(웹캐스팅) 업체들은 앞으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할때마다 한국당 0.0014센트를 음반제작사들에게 지불하게 됐다.

또한 라디오 방송국도 자신들의 방송을 인터넷으로 동시 제공할 경우엔 역시 음반제작사들에게 곡당 0.007센트를 내게 됐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 사무국은 최근 웹캐스터들과 레코드산업협회간에 이 같은 합의가 이루어져 4년여 간의 저작권 분쟁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기준은 지난 98년 웹 캐스팅을 시작한 업체들로부터 소급 적용된다.

로열티 지불 비용은 웹캐스팅 업체들이 제시한 액수의 10배 수준.

이에따라 앞으로 웹캐스팅업체들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기가 힘들게 됐다.

새너제이머큐리 뉴스에 따르면 대표적인 웹캐스트인 라이브 364가 매달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 영국BT의 하이퍼텍스트 제소

“과연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특허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나.” 영국의 브리티시 통신(BT)이 최근 미국의 인터넷접속 업체 “FAI”가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소했으나 BT에 대한 동정론보다는 비판론이 비등하다.

프랑스의 경제일간지 레제코(Les Echos)에 따르면 BT는 자사가 1976년 미 특허 당국에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특허를 인정받았으며, FAI가 이를 무시한 만큼 2000년 6월부터 지금까지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뉴욕의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BT는 이번 기회에 FAI 뿐 만 아니라 다른 16개 인터넷 접속업체들에 대해서도 하이퍼텍스트의 연결에 대한 자사의 기술 특허침해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T는 자사의 하이퍼 텍스트에 대한 기술은 독점적인 특허로, 오는 2006년까지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FAI측은 “BT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많은 전문가들은 “BT의 소송제기가 자칫 그동안 자연스럽게 이뤄





진 웹상의 단순한 연결(lien)기술 활용을 금지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과연 BT의 특허권 소유가 합당한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록 BT가 하이퍼 텍스트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훨씬 그 이전에 이를 언급한 과학자들은 적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일본 게이오 쇼난 후지사와대학의 철학 및 사회학교수인 테드 벨슨은 지난 1965년 하이퍼 텍스트의 존재를 언급했으며, 스탠퍼드대학의 두그 엔겔바르트 교수도 1960년대 말, 온라인 시스템에서의 하이퍼 텍스트 개념을 밝혀냈다.

유럽에서도 스위스에 자리한 유럽핵연구소(CERN)의 팀 베르너스-리가 1980년대 들어 워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를 구성하면서 하이퍼 시스템의 개념을 구상하기도 했다.

한편 BT는 뉴욕의 화이트 플레인스 연방 법원에서 첫신문에서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밝혔지만 인터넷 권리를 옹호하는 측의 비판론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증권 보험 새마을금고 신용금고 신용카드 등 제2금융권에서도 지난해부터 자동화기기 도입에 적극 가세함으로써 올해 금융자동화기기 시장은 호황을 이룰 전망이다.

올해 도입되는 자동화기기의 가장 큰 특징은 기능의 멀티화.

하지만 대부분의 자동화기기 부가기능들은 특허와 관련돼 있다. 따라서 바코드를 이용한 공과금 수납기능, 모바일을 활용한 자동화기기 입출금처리기능, 멀티 전자화폐 수용기능 등 다양한 새로운 기능들이 특허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화기기에서의 바코드를 이용한 공과금 수납 특허.

특허권을 보유한 웹캐시(대표 박남대, www.webcash.co.kr)는 이미 지난해 4월 교보생명과 제휴사업을 통해 바코드를 이용한 보험료 수납서비스를 상용화했다. 따라서 올해 자동화기기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보험회사 등이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웹캐시의 특허권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자동화기기 관련 특허들이 처리 방법 뿐만 아니라 기계 장치에 관한 특허도 함께 걸려 있으므로 자동화기기 생산업체도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특허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해결하고 제품을 개발해야 할 상황이다.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은 특허는 웹캐시가 보유하고 있는 중앙집중식 운영시스템 및 운영방법에 관한 특허다. 지금까지의 자동화기기 운영시스템은 신규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실행파일을 작성, 담당자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자동화기기의 파일을 교체해야 했다.

그러나 자동화기기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기관별 운영대수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자동화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됐다.

## 금융자동화기기 특허권분쟁일듯

자동화기기(ATM) 시장의 호황과 함께 자동화기기 관련 특허분쟁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금융권의 자동화기기 도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소매금융 전략에 따라 금융자동화기기 도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도입한 자동화기기는 7,208대. 하지만 올해 은행권의 도입계획은 10,500대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운영되는 자동화기기는 대부분 중앙집중식 운영시스템과 운영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자동화기기에 같은 방식이 채택될 전망이다. 웹케시 관계자에 따르면 웹케시는 지난 99년 웹방식의 자동화기기 사업을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 웹케시가 보유한 특허들은 그 당시 출원했던 것들이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이나 자동화기기 운영업체들이 점차 웹케시가 고안한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바꾸고 있어, 특허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문변리사와 협의하고 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고유 업무인데다 경쟁관계가 아니므로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자동화기기 운영업체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허권을 보유한 웹케시와 자동화기기 서비스업체, 제조업체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출처 마니투데이

SPI는 이에 맞서 발트해 인근의 구소련 국가인 라트비아에 공장을 세워 보드카 생산을 계속할 계획이지만 러시아 양조업체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러시아 보드카가 제 맛이 나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출이 중단된 보드카 중 스톨리치니아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수입량이 많은 인기 품목이며 모스코프스카야는 서유럽의 애주가들이 많이 찾고 있다.

SPI는 당초 올해 4억달러어치의 보드카를 수출할 계획이었다.

출처 동아일보

## 인터넷 스포츠토토 특허침해 실태 기각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해 상금을 받는 스포츠토토 복권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공방이 일단락됐다.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운영업체 (주)한국아스텐 [44370]은 지난해 10월 (주)엔지넷이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사이트 폐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 50부는 결정문에서 “한국아스텐이 운영중인 스포츠토토 인터넷구매대행 서비스와 엔지넷이 지난해 5월 특허등록한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내기 게임방 운영방법’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아스텐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구매대행 서비스를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한국아스텐은 또 엔지넷에 대해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중이다.

출처 연합뉴스

## 보드카 상표 내놔라” 러 정부-기업 분쟁

러시아 보드카가 상표 분쟁에 휘말려 수출이 중단됐다. 러시아 정부와 43개의 러시아산 보드카 상표권을 가진 소유스플로드인포트(SPI) 간의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서 러시아 칼리닌그라드항에는 수출길이 막힌 보드카가 쌓이고 있다.

SPI는 90년대 초반 구 소련 해체 직후의 혼란기를 틈타 러시아 국영회사로부터 30만달러의 헐값에 보드카 상표권을 사들였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상표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러시아 법원은 당시 상표권 양도가 적법했다고 판정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에 불복했고 최근에는 수출용 보드카의 선적을 금지시켰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 7. 20. 99헌마468**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당 사 자】**

청 구 인 마 준 호  
 서울 용산구 보광동 448 신동아아파트 8동  
 1206호  
 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주 명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8년 형제428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7. 20.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80의 21 소재 전기보온압력밥솥(이하 '압력밥솥'이라 한다) 제조업체인 대웅전기산업주식회사(이하 '대웅전기'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김용진(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은 청구인 운영의 주식회사 마마(이하 '마마'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압력밥솥이 대웅전기의 압력밥솥보다 잘 팔리자, 마마의 압력밥솥 매출을 떨어뜨리고 대웅전기의 압력밥솥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해,

1998. 4. 18.경 위 대웅전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마마가 생산하는 압력밥솥은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형상을 도안하여 특허청에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을 하여 생산하는 것으로서, 대웅전기가 특허청에 등록한 실용신안이나 의장을 모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마가 대웅전기의 압력밥솥에 관한 실용신안권이나 의장권을 침해한 것처럼 마마의 용산지사 대표인 청구의 이용연 등 약 20개 업체 대표에게 "마마제품은 대웅전기가 등록한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을 침해하고 있는 불법제품임이 명백하다. 귀사는 해당 불법제품을 유통시키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그와 같은 귀사의 행위는 마마와 동일한 위법행위에 해당되며, 본 회사로서는 귀사에 대해 민·형사상 의법조치할 것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마마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압력밥솥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8.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9. 8.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봐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 11. 30. 99헌마624**  
**[각하]**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판시 사항】

실용신안권자의 등록료 납부기간과 등록료 불납에 대한 효과를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및 제34조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에 있어서 늦어도 등록료 추가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는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결정 요지】

청구인은 1991. 5. 17. 제1내지 제3년분의 등록

료를 납부하고 같은 날 등록을 마친 실용신안권자로서 1994. 6. 8. 제4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1998. 7. 20. 제8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한 때까지 매년 법에 정하여진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제9년분의 등록료를 납부기한인 1999. 2. 21.과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인 같은 해 8. 21.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1999. 8. 22.부터는 이 사건 심판대상 범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인 1999. 10. 30.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니,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가. 등록료의 납부 고지나 안내제도 또는 등록 말소 예고제도 등이 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에 청구인이 특허청의 통고 등에 의하여 1999. 8. 22.에 등록료 납부기간의 도과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그 밖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위 일자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일자에 청구인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뒤 청구인이 등록료와 할증료를 납부한 1999. 9. 18.에 즈음하여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인이 알았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 따라서 이로부터 60일 내인 1999. 10. 30. 청구된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을 준



수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단 1회의 등록료 불납으로 권리의 본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가사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기본권제한 입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피해의 최소화, 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불납사실의 통지 및 권리소멸의 예고,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경우의 권리회복 등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34조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당사자】**

청구인 예해금  
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청구인 특허청장

**【심판대상조문】**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 제34조 중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는 부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과 청구의 정형은 “흠착용 자석장치”를

고안하여 1988. 7. 22.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고 1991. 2. 21. 출원공고가 된 후 같은 해 5. 17. 제1내지 제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같은 날 실용신안등록번호 제56701호로 등록을 마친 실용신안권자이다.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년분 이후의 등록료를 출원공고일을 기준으로 매년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1994. 6. 8. 제4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1998. 7. 20. 제8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한 때까지 매년 실용신안법에 정하여진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였으나, 제9년분의 등록료를 납부기한인 1999. 2. 21.과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인 같은 해 8. 21.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그 후인 같은 해 9. 21. 제9년분의 등록료와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할증료를 납부하려 하였으나, 특허청장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실용신안권이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인 같은 해 2. 22.로 소급하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27. 청구인의 실용신안권을 소멸등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에서 등록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을 산업자원부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제34조 중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자신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제29조 제3항 및 제34조 중 “실용

실용신안자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그 규정 및 관련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29조(등록료)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실용신안권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 중 최초 1년분의 등록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의 경우에는 각각 분할출원 또는 이중출원을 말한다)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4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80조·제81조 및 동법 제83조의 규정은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81조 제1항 중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실용신안권자”로 보며, 동법 제81조 제3항 중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는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로 본다.

특허법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의 금액을 납

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 (1) 등록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실용신안권의 소멸사유를 정한 것이므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성질의 것인데도 이를 산업자원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 제29조 제3항은 포괄 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이에 의하여 등록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산업자원부령이 빈번하게 개정되어 납부의무자의 등록료 납부에 혼란을 초래한 것은 청구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
- (2)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체납의 경우와 같이 납부고지를 하고 가산금을 징수하며 압류 등 체납절차에 의하여 등록료 납부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나아가 권리소멸 후에 권리회복을 위한 절차를 두는 등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단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실용신안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 나. 특허청장의 의견

- (1) 법 제29조 제3항은 산업자원부령에 위임하는 범위를 등록료, 납부의 방법과 기간



으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산업자원 부령의 개정으로 납부기한을 설정등록일로 변경하였으나 그 부칙에서 개정 전에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자는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공고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된 바 없다.

- (2)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국가정책적 견지에서 입법자가 내린 결단의 산물로서 과도한 발명자 등에 대한 보호는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개량기술의 이용을 방해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을 정체시킬 수도 있으므로 사익과 공익을 조화하는 최적의 보호가 요구된다. 따라서 현행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은 공공이익과의 조정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의 설정, 사용·실시의무의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 (3) 지식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헌법 제 23조에 의하여 보장되나, 이와는 별도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지식재산권의 공공적 측면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이때 법률로써 보장한다는 의미는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존속요건으로 등록료의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권리를 소멸시킨다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헌법재판

소법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1. 5. 17. 제1내지 제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같은 날 등록을 마친 실용신안권자로서 1994. 6. 8. 제4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1998. 7. 20. 제8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한 때까지 매년 법에 정하여진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제9년분의 등록료를 납부기한인 1999. 2. 21.과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인 같은 해 8. 21.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1999. 8. 22.부터는 이 사건 심판대상 범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인 1999. 10. 30.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니,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4. 결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법 제34조에 관하여 다음 5.와 같은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성의 반대 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5.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성의 반대 의견

우리는 실용신안법 제3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는 부분(이하 ‘권리소멸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나아가 위 권리소멸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먼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은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1999. 8. 22.에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등록료의 납부 고지나 안내제도 또는 등록말소 예고제도 등이 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에 청구인이 특허청의 통고 등에 의하여 위 일자에 등록료 납부기간의 도과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그밖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위 일자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일자에 청구인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뒤 청구인이 등록료와 할증료를 납부한 1999. 9. 18.에 즈음하여 비

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인이 알았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 따라서 이로부터 60일 내인 1999. 10. 30. 청구된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은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한 제23조와 별도로 제22조 제2항에서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발명가 등의 산업재산권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실용신안법은 이와 같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신규의 실용적 고안을 창안<등록한 사람에게 실용신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여 신규의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실용신안법 제1조 참조)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권자에게 등록료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면서(법 제29조 제1항) 제4년분 이후의 등록료는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을 그 전년도에 납부하도록 하고(1981. 8. 3. 상공부령 제634호로 전 문개정된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 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7조 제7항)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6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추가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법 제34조, 특허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을 두어 추가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된다(법 제34조, 특허법 제81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소멸조항의 입법목적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권리포기절차 없이도 그 고안을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독점권 부여의 대가적 성질을 가진 등록료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 권리소멸조항은 추가납부기간을 포함한 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권리의 포기로 간주하여(법 제34조, 특허법 제81조 제3항 전단) 예외 없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입법수단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이 권리소멸조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1)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은 실용신안권에 의하여 독점되던 고안을 일반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도에 개방하여 그 효용을 증대하고 그 기술의 개량이나 응용기술의 개발을 쉽게 한다는 공익의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용신안권의 존속 중에도 일반공중은 권리의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등의 설정(법 제42조, 특허법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등) 등을 통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본래 가능하고, 또한 등록된 고안의 내용이 실용신안공보에 공개되어(법 제35조 제3항) 새로운 고안의 개발에 이를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이미 가능한 데다가 실제로도 실용신안권의 장벽에 불구하고 기존의 기술수준을 뛰어넘는 대체기술이 급속히 개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므로, 기술의 원활한 이용과 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굳이 권리를 중도에 무리하게 소멸시킬 필요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은 등록료의 불납으로써 권리포기의사의 존재를 단정하고 있으나, 등록료 등의 징수규칙이 자주 개정되어 온 실정을 고려할 때, 그리고 천재지변, 대리인이

나 담당직원의 실수, 관리 데이터의 오류나 누락 등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단정은 매우 성급하여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자에게 권리포기의 의사도 없고 또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등록료가 불납된 경우에까지 권리를 일률적으로 소멸시키도록 한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은 그 입법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리를 중도에 소멸시킴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러한 공익과 실용신안제도 자체의 본래 목표 즉, 신규의 고안자에게 10년이라는 장기간의 계속적인 독점권을 부여하여 창안의욕을 고취시키고 권리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독점된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촉구함으로써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비교할 때에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새로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실용신안권이 본래 목표로 하는 공익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또한 양자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권리를 중도에 소멸시키는 것이 권리를 존속시키는 것보다 더 큰 공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의 취지를 독점의 대가인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데 대한 제재로 본다 하더라도, 그 제재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어야 하고 그 피해가 제재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일단 실용신안권이 소멸되면 이미 그 고안은 신규성이 없어 다시 등록할 수 없다는 점, 비록 추가납부기간을 한번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단 1회의 등록료 불납만으로 권리의 본체까지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점, 1회분(금액으로는 2회분)의 등록료와 권리의 본체가 결코 등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권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등록료가 불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등록료 1회의 불납만으로 권리소멸이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침해의 정도가 지나치고 법익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잉제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은 가사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기본권제한입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 (2) 적법절차의 원리에 어긋난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불이익처분에도 적용된다(헌재 1990. 11. 19.90헌가48, 판례집 2, 393 참조). 적법절차의 원리는 절차적 차원에서 볼 때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인 국민에게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그 기반에는 국민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문명국가의 의무라는 원칙이 전제되어 있는 헌법의 원리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은 6월의 추가납부기간을 한번 주는 이외에는 등록료의 납부를 미리 고지한다거나 불납사실을 통지하여 권리소멸의 위험을 예고하여 준다거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권리를 회복시켜 준다거나 하는 것에 관한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국가가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입법으로서, 권리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는 자기의 입

장과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법적으로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기술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기술의 수출과 수입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각국에서, 등록료의 납부에 관하여 6월의 추가납부기간을 허용하는 외에, 등록료의 불납사실을 통지하여주는 제도 또는 권리소멸의 위험을 예고하여주는 제도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제도 등을 마련하여 실용신안권의 소멸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구제의 절차를 입법화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은 “누구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에 박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헌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 (3)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은 절차적으로는 적법절차의 원리에 어긋나고, 내용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 다. 결 론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이영모 한대현(주심)  
하경철  
김영일 권성 김효중 김경일 송인준

발특2002/4